번호 06-2

제 목	국문	보건의료공급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방안 연구			
	영문	Research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Laws associating the Supplies of Medical Resources			
저자 및 소속	국문	손명세, 조우현, 김소윤, 김기경[1)]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세대 원주의대 간호학부[1)]			
	영문	Mongsei Sohn, Wo Hyun Cho, Soh Yoon Kim, Ki Kyoung Kim[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age of Yonsei Wonju University[1)]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현행 보건의료공급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은 그 비체계성과 관련보건의료법규간의 형평성 및 상충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교육, 보건의료인력의 질적관리 및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보건의료인력의 국민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시설 및 기관의 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보건의료시설의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약품 및 보건의료용품등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체계의 정립 및 보건의료지식의 발달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간자율촉진, 의료정보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제공에 대한 규제적 기능에서 이를 양성, 유도, 촉진하는 기능 중심의 법으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법의 구체적인 개정 필요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을 보건의료 인력, 시설, 약품 및 재료,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등으로 다시 분류하여 관련 내용들을 다시 묶어서 비교하였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보건의료관련법률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보건의료 공급법의 구체적인 개정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료법은 의료와 의료행위, 의료제공의 이념 및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시안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보건의료공급법의 총칙적 이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제공자들간에 기능분담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규에 명시된 의료제공자에 관하여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 간호조무사는 동법제85조, 의료유사업자는 제6조, 안마사는 제61조,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약사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각 개별법간의 용어·면허·자격·권리와 의무 및 기능분담등에 대한 규정이 서로 불일치하고 명확하지 않다. 셋째, 법간의 체계와 통일성을 위해서는 전체 보건의료법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공공의료부문으로 자원조달·개발·관리·촉진·예방·조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공공보건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사적 의료부문 즉 의료인력의 자격·의무·권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넷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자원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고,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자원지원에 대해 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행정규제의 완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보건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기능을 부여하여 의료인 자체의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설립주체의 다양화 필요. 이에 전제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조성이다.

4. 고찰

보건의료공급관법 체계는 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법률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 대응방안이 미흡하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총칙적 규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 즉, 의료인은 의료법에, 약사는 약사법에,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에,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으로 보건의료종사자들에 관한 규정이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등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의료법이 보건의료인력규정을 총괄하지 못한다. 또한, 보건의료종사자의 권리의무규정이 각각 개별법에서 중복되거나 형평성의 문제로 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공통 권리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의무 외에 구체적인 직무규정을 법규명령화 하는 방안 고려 하여야 한다. 각 해당분야의 직무규정은 윤리규정보다 구체적이며 법적 구속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직무규정은 해당협회에서 작성하고 공인한 직무규정을 협의회에서 심사후 이를 법규명령으로 인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각각의 직업의무규정집을 해당 전국협회에서 준비하여 국사원에 제출하여 공공행정규정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인과 별도로 보건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의 공통 권리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총괄관할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공급관련규정을 각 개별법에 두지 않고 하나의 단일법에 총괄 규정 하되 독립적으로 장절구성함으로서 법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